

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5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4. 3.

발의자 : 박홍근 · 위성곤 · 전혜숙
정재호 · 설훈 · 변재일
오제세 · 안규백 · 권칠승
문미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과 유사한 다른 공제회 근거법에서는 회원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군인공제회는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또한,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을 회원으로 하고 있어 그 자산 규모가 9조원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에 회계검사 등 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,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 · 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

하고,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및 제17조의4제5호 신설).

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
2. 회원(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)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
3. 회원을 위한 복지·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

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, 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검사 결과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4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. 회원(회원의 유가족을 포함 한다)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. 회원을 위한 복지·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<p>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</p>
제17조의4(경영공시)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	제17조의4(경영공시) ----- ----- -----

<p>한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5.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</u></p>	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, 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검사 결과</u></p>
--	---